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4. 22.
제공자 : 농림수산물부 자원환경과
과 장 : 정 복 철
사무관 : 이 병 응
전 화 : 500-2384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4P)

이 자료는 2010년 4월 2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산자원관리 체계화 기대
- 수산자원관리 및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벌칙도 강화

- ☐ 농림수산물부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2010. 4. 2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UN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당사국으로서 급변하는 해양법 질서에 부응하고, 이미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어획량을 적절히 규제하면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 또한,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보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어업분쟁의

조정, 불법어업 단속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법에 규정한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최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그 외에도 포획·채취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을 위반하거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 ☐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연근해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의 크기나 형태, 어구·어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연근해 어장에서 조업 중 발생하는 분쟁의 해소는 물론이고, 불법어업을 줄이고 어업인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1>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가. 제정취지

- 현행 수산업법은 우리나라 수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종합법적 성격의 법률로써,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제로 되어 있음. 즉, 수산업법은 3개의 대통령령과 15개의 부령이 부속된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된 체제로 되어 있어 어업인들이 수산업 관리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었음
- 더욱이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입법체제와는 달리, 대통령령이면서도 개인의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벌칙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일부 규정 중에는 1960년대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던 시대에 정한 기준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수산물 증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어업제도와 현재의 자원관리 조치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이 번에 제정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은 급변하는 해양법질서에 부응하고, 이미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어획량을 적절히 규제하면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체계의 정비로 이해됨. 즉,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행 「수산업법」과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조성에 관한 사항을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통합하는 것임

나. 제정이유

-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조업척수의 제한, 어구의 사용금지 등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체계화하는 한편,
-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

○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 총허용어획량 설정, 보호수면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평가계획 등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 수산자원의 보호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및 판매 금지, 휴어기의 설정,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 마련

-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어업자협약 제도를 마련하고, 어업자협약의 변경 및 폐지,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등 어업자협약의 관리에 관하여 정함

○ 수산자원 회복 및 조성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배분량 및 부수어획량의 관리, 판매장소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의 부화·방류 제한,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와 사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은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는 수면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효과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토지 매수 협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3. 시행)

가. 제정이유

-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바탕으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어구의 사용금지, 수면의 관리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호·관리방안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내용,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등 수산자원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주요내용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 시·도지사는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의 내용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해역별·어종별로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에는 어종의 분포, 수산자원 변동의 추이 및 어획노력량의 변동 등에 관한 조사계획과 수산자원량의 변동 요인 및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등 수산자원의 보호조치 구체화
 - 어류·패류 등 수산자원의 종류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을 별표 1 및 별표 2에 정하고, 근해어업·연안어업 등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별표 3부터 별표 10에 구체화하는 한편, 어업의 종류별로 사용이 제한되는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방법,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11부터 별표 13에 정함
-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조치
 - 시·도지사는 어린 고기의 남획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의 개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총허용어획량의 할당기준

- 시·도지사가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과거 어획실적 및 어획능력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도록 하고,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하는 때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대상 및 부과기준 등

- 맨손어업·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를 한 자,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금을 면제하는 한편,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및 감액기준을 각각 별표 14 및 별표 15에 정함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수면의 관리를 위한 조치방안 구체화

-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절차,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업을 별표 16에 정하는 등 수면의 관리를 위한 조치방안을 구체화함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부령)은 법제처 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 제정 시행을 추진